

금융투자업규정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2024. 6.

금 융 위 원 회

1. 신용거래대주 최소담보비율 인하 [제4-25조제1항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인 신용거래대주의 최소담보비율은 120%로 규정되어있는 반면, 기관 대차거래의 담보비율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 결정 (통상 105% 수준)
- 개인 신용거래대주의 최소담보비율이 기관 대차거래에 비해 높아, 공매도 거래조건이 ‘기울어진 운동장’이라는 문제제기 지속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개인 신용거래대주의 최소담보비율을 105%로 인하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공매도 거래조건이 ‘기울어진 운동장’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신용거래대주 담보평가 규제 완화 (제4-26조제1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인 신용거래대주의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평가방법은 규정 (예: 상장주식의 경우 당일 종가)되어 있는 반면, 기관 대차거래의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은 거래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평가
- 개인 신용거래대주와 기관 대차거래 간 거래조건이 상이하여, 공매도 거래조건이 ‘기울어진 운동장’이라는 문제제기 지속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개인 신용거래대주의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평가방법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공매도 거래조건이 ‘기울어진 운동장’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